

# 審 查 報 告 書

## 1. 審查經過

가. 提出日字 : 1998. 9. 16

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
다. 回附日字 : 1998. 9. 16

라. 上程日字 : 1998. 9. 21

## 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: 總務課長 方景泰)

### 가. 提案理由

- 작은 지방정부 실현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구 5천명 미만의 소규모 행정동(오산동)을 석남동으로 통폐합 하려는 것임.

### 나. 主要骨子

- 읍·면·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기관명란의 “오산동사무소”란을 삭제 【별표】

### 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指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서 자치단체의 읍·면·동사무소 소재지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·군조례로 정하되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써
- 서산시 기구개편 계획에 의거 오산동이 석남동으로 통폐합되는 조례개정이 추진됨으로 인하여 읍·면·동소재지에 관한 조례도 개정이 병행 되어야 하는 안건으로써
- 본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,  
다만, 동간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기존 오산동 동민들이 통합 되는 석남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指 : 생략

5. 討 論 : 없었음.

6. 少數意見 : 없었음.

7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21 호
의결년월일	1998. 9. 22. (제 호)

# 서산시청맞춤·면·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21 호 서 산 시 의 안  
제정일: 1998. 9. 16

# 서산시청밧읍·면·동사무소 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1998. 9. 16  
제 출 자 서 산 시 장

## 1. 개정이유

작은 지방정부 실현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구 5천명미만의 소규모 행정동(오산동)을 석남동으로 통폐합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읍·면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 조례중 기관명란의 “오산동사무소”란을 삭제 [별표]

# 서산시청밋음·면·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

서산시청밋음·면·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 중 제목을 “서산시청밋음·면·동사무소의 소재지”로 하고 “오산동사무소”란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	개정안	
[별표] 읍·면사무소의 소재지		[별표] 서산시청및읍·면·동사무소의 소재지	
기관명	주소	기관명	주소
서산시청 ~ 석남동사무소	(생략)	서산시청 ~ 석남동사무소	(현행과 같음)
오산동사무소	서산시 오남동 305-6번지	삭제	삭제